

	고교연계협력센터규정	규정번호	3-7-27
		제정일자	2023.05.01.
		개정일자	2025.05.01.
		개정차수	1
		소관부서	입학홍보협력처 (고교연계협력센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입학홍보협력처 산하 고교연계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업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고등학교 방문 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2.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3. 교사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4. 고등학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제3조(조직) ①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센터의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③ 센터의 운영을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④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고교연계협력위원회) 고교연계협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 평가하기 위하여 고교연계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교연계 프로그램 협의
2. 고교연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자문
3. 고교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후 협의
4. 교사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문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고교연계협력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8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④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②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서기) 위원회에 위원 중 1인을 서기로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교직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 사항은 위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